

한국남부발전(주) 2019년도 6직급 후생담당원 채용공고

○ 한국남부발전(주)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·신체조건·용모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**블라인드 평가방식**을 기본으로 합니다.

○ 한국남부발전(주)는 직무역량중심의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해 「**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고용노동부 장관상('18.12)**」, 「**NCS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('16.11)**」 등을 수상 하였습니다.

◎ 채용유형별 선발예정인원 (단위 : 명)

모집지역	채용유형	직무설명서	6직급
-	합 계		5
삼척	후생담당원 (영양사)	-	1 (1일 8시간 근무)
	후생담당원 (조리원)	-	4 (1일 6시간 근무)

※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직무적격여부 등 채용여건을 고려하여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, 채용인력은 회사의 인력소요에 따라 채용 후 수행직무가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

I

6직급 후생담당원

1. 채용조건

- 채용형태 : 정규직 6직급 후생담당원(별정직)
- 근무시간 : 후생담당원(영양사) - 주 40시간(8시간/일)
후생담당원(조리원) - 주 30시간(6시간/일)
- 급여수준 : 6직급 초임급여 기준 시간비례 지급
※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: 초년도 약 3,200만원 수준
(2년차부터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며 성과급 B등급 기준 약 3,900만원 수준)
- 근무지역 : 삼척. 추후 회사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

2. 지원자격

□ 공통사항

구 분	주요 내용
학력, 전공 연령, 외국어	○ 제한 없음 ※ 단, 연령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(만 60세)을 넘지 않은 자
병역	○ 군필 또는 면제자(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)
기타	○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○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: 공고마감일(접수 마감일) 기준

□ 직무분야별 자격사항

직무분야	모집인원	자격, 우대사항 및 업무내용	
영양사 (8H / 일)	1명	자격	○ 영양사 면허소지자 ○ 조리사 면허소지자 ○ 보건증 소지자
		우대	- 집단급식소(상주인원 300명 이상)에서 1년 이상 해당직무 경험자 - 위생사 자격 소지자 -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- 컴퓨터 활용자격 소지자 - 삼척본부 출퇴근 가능자
		업무 내용	○ 구내식당 운영계획 수립, 식단운영, 식재료관리, 원가관리 등
조리원 (6H / 일)	4명	자격	○ 조리사 면허소지자 ○ 보건증 소지자
		우대	- 집단급식소 1년이상 해당직무 경험자 - 삼척본부 출퇴근 가능자
		업무 내용	○ 구내식당 전처리, 조리, 식품검수 지원, 위생안전 실무 등

※ 우대사항은 면접 시 평가요소로 일부 반영

※ 수행업무는 입사 후 인력운영방침에 따라 6직급 업무 순환 가능

3. 전형방법

단 계	내 용	세부기준	비고
1단계	서류전형	○ 적격심사 : 적부판정 ○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-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	30배수 선발 (동점자 처리 : 전원합격)
2단계	필기전형	○ NCS기반 필기전형 - 인성검사 : E, F등급 부적합판정 (A ~ F 등급) - 직무능력평가(K-JAT) : 직무수행+직업기초능력 (100점 만점)	5배수 선발 (동점자 처리 : 전원합격)
3단계	면접전형	○ 1차 면접(100점) : NCS 경험, 상황대응	3배수 선발 (동점자 처리: 하단 참조)
		○ 2차 면접(100점) : 인성 및 조직적합성	-
4단계	합격예정자 결정	○ 합격예정자는 2단계 및 3단계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	1배수 선발 (동점자 처리: 하단 참조)
5단계	신체검사,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	○ 적부판정 ○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	최종합격

* K-JAT(KOSPO Job Aptitude Test) : 남부발전 고유의 역량검사로 핵심가치와 연계된 KOSPO 필요역량

※ 3단계(1차 면접) 동점자 처리기준 : 직무능력평가 고득점 순

※ 4단계(합격예정자) 동점자 처리기준 : 1차 면접 > 직무능력평가 > 2차 면접 고득점 순

※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중심 채용정보는 <http://www.ncs.go.kr>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4. 우대사항 적용대상

가산 유형	유형 정의	전형별 가산점		
		서류	필기	면접
등록 장애인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	면제	배점의 10%	배점의 10%
취업지원 대상자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○ "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" 기준 ※ '국가유공자(가족) 확인서' 인정 불가	면제	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% 또는 5%	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% 또는 5%
저소득층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-	배점의 5%	-
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	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되는 지역 ○ 하동발전본부 : 발전소 착공일(93.9.14)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(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) - 해당지역 :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○ 삼척발전본부 :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(11.1.1)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(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) - 해당지역 : 삼척시 원덕읍	-	배점의 10%	-

※ 가산점은 10% 한도 내 중복 인정(단, 장애와 보훈 가점 중복 시 10% 초과 가능)

5. 제출서류

※ 서류는 1차 면접전형 시 확인. 최종 제출은 합격예정자 발표 시 안내.

-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
-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
- 최종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원본 1부
-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
-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
- 경력증명서(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) 사본 1부

[근무기간과 담당업무(영양사 혹은 조리원)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]

* 집단급식소 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: 집단급식소 경력증명서,
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증 사본(2개 모두)

- 1) 집단급식소 경력증명서(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)
 - . 경력증명서에 집단급식(인원수 포함) 경험 유무를 표시
 - .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(영양사 혹은 조리원)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 - 2) 근무했던 집단급식소 설치.운영 신고증 사본
-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 -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 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 -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확인서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
 - [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확인서 발급 방법]
 - ▶ 발급처
 - 하동발전본부 총무부 (070-7713-1521, 1523)
 - 삼척발전본부 총무기획부 (070-7713-5521, 5825)
 - ▶ 등록방법 : 해당 발전소에서 증명서 발급 후 지원서 작성 시 발급번호 기재

 채용전형 일정 및 유의사항

절 차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'19. 11. 18(월) ~ 12.2(월) 10시	○ 회사 홈페이지 (https://www.kospo.co.kr)
지원서 접수	'19. 11. 26(화) 11시 ~ 12. 2(월) 10시	○ 채용 홈페이지 (https://kospo.saramin.co.kr)
필기시험 대상자 발표	12.5(목) 18시	○ 채용홈페이지, 문자 및 e-mail 통보
필기시험	12. 7(토)	○ 시간 별도 공지 ○ 장소 : 서울
면접전형 대상자 발표	12. 10(화) 18시	○ 채용홈페이지, 문자 및 e-mail 통보
면접 1차	12. 13(금)	○ 12. 17(화) 18시 합격발표
면접 2차	12. 19(목)	○ 합격자 개별 통보
최종합격자 발표	12. 26(목)	○ 채용 홈페이지 및 e-mail 통보

※ 채용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「인사관리규정」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(해임) ①항 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.

- 채용유형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을 지참하여야 하며,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합니다.
-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채용업무관리세칙」, 「교육훈련규정」 제23조(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), 「보수규정 관리세칙」제4조(초임호봉)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,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. 또한 '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'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」 및 「국토교통부 예규 2018-198호」를 따릅니다.
-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별표 39(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)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.
- 지원서 작성시 성별, 연령, 출신 학교,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,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.
- 2차 면접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,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.
 -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함
 - 예비합격자는 향후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대상 우선 순위
 -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: 회사전화를 활용(070-7713-****)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
-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,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필기시험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, 지원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 (유선상의 문의 연결이 어려울 시 게시판을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)
 - 채용전형관련 문의(평일 14~18시) : 한국남부발전(주) 인재경영실 ☎ 070-7713-8214, 8218
 -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: 지원시스템 게시판 Q&A

별첨 :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끝.

[인사관리규정 제10조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]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(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)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
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,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